

#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263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4. . . 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## 1. 개정이유

-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이『직업안정법』으로 개정되고 동법중 직업안정(국내직업소개사업)업무중 일부가 도지사의 권한으로 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빈번한 접촉과 현지성이 요구되는 유료직업소개사업허가등 사무를 시장·군수 및 증명출장소장에게 권한위임하여, 행정능률 향상 및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.

## 2. 주요골자

- 국내직업소개사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(8종)
  -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
  - 직업소개업소의 지도 및 감독
  -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폐지신고의 수리
  -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
  - 직업소개소 폐쇄등 조치
  - 직업소개사업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
  - 직업소개사업의 보고 및 검사
  -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

3. 조 례 (안) : 따로붙임

4. 신구조문대비표 : 따로붙임

5. 법적근거

- 지방자치법 제95조
- 직업안정법 (법률 제4733호, 1994. 1. 7)
- 직업안정법시행령 (대통령령 제14327호, 1994. 7. 16)
- 직업안정법시행규칙 (노동부령 제94호, 1994. 8. 2)

6. 기타참고자료 : 따로붙임

## 조례 제 호

###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"별표1" 권한위임사무중 지역경제과 소관 "제6호" 다음에 "제7호"를

별지와 같이 신설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시장·군수·출장소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

분야별	일련 번호	사 무 명	근 거 법 령	수임기관
지 역 경제과	7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내직업소개사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</li> <li>가.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</li> <li>나. 직업소개업소의 지도및단속</li> <li>다.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폐지 신고의 수리</li> <li>라.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 취소및 사업정지</li> <li>마. 직업소개소 폐쇄등 조치</li> <li>바. 직업소개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</li> <li>사. 직업소개사업의 보고및 검사</li> <li>아.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직업안정법 제19조</li> <li>동법시행규칙제29조</li> <li>동법 제35조</li> <li>동법 제36조</li> <li>동법 제37조</li> <li>동법 제40조</li> <li>동법 제41조</li> <li>동법 제49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시장·군수 ·출장소장</li> </ul>